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심현정 의원(대표 발의)
- 제안일자 : 2024. 3. 5.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되었고,¹⁾ 부칙 제2조에서 지자체는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새로 결정하도록 함.

나. 입법의 취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평창군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별표 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상향 조정함.

현 행			개 정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급기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원 1명	월 900,000원	월 200,000원	의원 1명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 12. 14.

5. 종합검토의견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최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